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장문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 1. 제안이유

- '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평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직무대리의 순위(안 제2조, 제3조)
-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 3.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근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직무대리의 순위

안 제4조에서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4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